

합산대상교원	인정대상기관(환산율)	인정대상경력
나. 특수학교에서 이료,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, 준교사, 실기 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 기관(10할 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
다. 사서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기관 (10할 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
라. 보건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교법인,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(10할 이내) ◦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지방 공사로 설립된 병원(10할 이내) ◦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(지)소, 「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(10할 이내)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(10할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(간호사,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) 근무한 경력
마. 영양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 기관(10할 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
바. 전문상담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기관 (10할 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 기술자격증* 취득 후 또는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담사로 근무한 경력 <p>*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(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임상심리사,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)</p>